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6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최인호·고영인·홍기원

이탄희 · 김병욱 · 이원택

전재수 · 박재호 · 조승래

박상혁 · 조응천 · 송옥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중이나,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함.

이 법 제7조제4항을 보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(안 제7조제4 항). 법률 제 호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4항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지정"을 "지정·지정취소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	제7조(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
의 지정 및 취소 등) ① ~ ③	의 지정 및 취소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	④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
가 양성기관의 <u>지정</u> 기준·절차	<u>지정·</u>
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	<u> 지정취소의</u>
통령령으로 정한다.	